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0260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

변론 종결2014. 9. 25.

판결 선고201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강원 횡성군 A전 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2. 10.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2. 11. 13. 접수 제200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당시 B, D은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08.4.1.	외환은행	E	2009.3.31.	85,000,000원(100,000,000원)	
2009.3.12.	외환은행	F	2010.3.11.	200,000,000원(200,000,000원)	

나. C 주식회사는 2012. 7. 10. G 주식회사(대표이사 B)에 흡수·합병되었다(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 원고는 G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3. 3.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외환은행에게 2013. 10. 10. 87,389,020원, 187,683,8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① 피고는 2012. 4. 18. G와 사이에 G가 개발 중인 침구용 살균청소기에 관한 개발, 납품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선금금)으로 3억 원을 지급기로 하면서 10만대 기준으로 1대당 3,000원을 납품가에 반영하여 개발비 상당액을 회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16. 1억 원, 같은 달 20. 1억 원, 2012. 5. 10. 1억 원을 G에 선금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자금난에 빠진 G의 요청에 따라 2012. 6. 경 G에게 운영자금 1억 원(지급기일 6월 후, 이자 월 7%)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대여금 합계 4억 원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G의 대표이사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G가 이자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약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2012. 10. 25.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13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응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초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G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청소기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청소기를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와 같이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피고에게 대표이사인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성구

판사최연미

판사정경환